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4. 29 선고 2020가단824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인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민

담당변호사 최철호

변론 종결2021. 4. 1.

판결 선고2021. 4. 2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5. 체결된 별지1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2,067,0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주문 제1, 2항과 같다.

[예비적]

피고와 C 사이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9. 3. 14. 접수 제28625호로 마친, 별지2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9. 3. 18. 접수 제248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7451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1. 24. '주식회사 D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90,909원과 이에 대하여 2008. 8. 9.부터 2010. 11. 16.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구상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구상금 판결은 2010. 12. 17. 확정되었다.

나. C의 모친인 E이 2018. 12. 23. 사망하자, E의 자녀인 C과 피고는 2019. 3. 5.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국내 금융기관에 있는 모든 예금 채권을 피고가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9. 3.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과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할 당시 C은 E의 재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판결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사해행위 성립 가)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등의 가분채권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 또는 승계된다.

이 사건 분할협의 중 망 E의 예금채권에 관한 부분은 위 법리에 비추어 그 실질은 C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를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여분 및 특별수익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의 기여분과 C의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피고의 기여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피고의 기여분 산정에 관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C의 특별수익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기업은행, F은행, G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C의 계좌로 2004. 1. 10.

50만 원, 2004. 1. 28. 200만 원, 2006. 6. 14. 300만 원, 2006. 8. 30. 20만 원, 2007. 10. 25. 150만 원을 각 입금하고, C의 G은행 청약통장에 2001. 12. 부터 2009. 10.까지 합계 약 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는 그 밖에도 E이 2003. 10. 29. 4,000만 원, 2007. 10. 15. 1억 4,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F은행, H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금전 지급의 시기와 규모, 모친이 아들에게 소액의 돈을 송금해 주는 등의 행위는 상속분과는 관계없이 자연적인 애정을 바탕으로 자녀를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전 지급을 C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사해의사 부존재 및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점,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2008. 8. 8.경 발생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 시에는 이미 시효로 소멸된 것으로 인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C이 2018. 4. 2. 원고가 받은 2012. 7. 5.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을 발급받은 점(갑 제12호증)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C의 사해의사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피고와 C이 오랜 세월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사이인 점, 피고와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면 C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피고가 E의 재산을 단독 상속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C의 채무초과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을 제10호증의 기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2) 갑 제1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2020. 10. 14.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9. 3. 13. E의 H은행 I 계좌에서 100,181,611원, H은행 J 계좌에서 53,376,755원을 각 출금한 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이 사건 구상금 판결의 판결금 범위 내에서 원고 내부 기준에 따라 계산한 2021. 1. 11.자 채권액)이 72,067,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3) 결국,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 중 원고의 채권범위 내인 별지1 기재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72,067,0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왕현

별지